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외국환거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‘25.3.18일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‘25.9.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 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, 거래상대방의 범위,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외국환중개회사가 비(非)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 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마련(안 §18)

-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·시설·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·절차 등을 규정

나. 업무제휴 방식을 통한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 허용(안 §19)

- 외국환중개회사가 비(非)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 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기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29. ~ 2025. 7. 7.)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제3호부터 제5호”를 “제1호다목부터 마목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 중 “영업소의 소재지”를 “영업소의 소재지(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고객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신청한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“외국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”)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가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무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요건

가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법인일 것

나.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외국통화의 매매(선물환은 제외한다)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다.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어 것

라.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·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어 것

마. 인가를 신청한 자(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)가 법 제 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가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고객외국환중개업무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요건

가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거나,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일 것

나.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영업기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볼 수 있다.

다.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설을 국내에 갖추는 것

라.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·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는 것

마. 인가를 신청한 자(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)가 법 제 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.
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자본금”을 “자본금 또는 영업기금”,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외국환중개업무의”를 “업종별 외국환중개업무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가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서 외국환중개회사와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 계약한 자(이하 “전문금융기관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가. 한국은행

나. 정부(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다.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

마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
바. 외국 금융기관(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)

제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에는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전문금융기관등이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정한다.

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그 책임한도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8조제9항 및 동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외국환중개업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(非)핵심 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방법
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외국환업무의 등록) ①·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가.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 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 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 을 체결할 것 나. ~ 라. (생략) ③ ~ ⑨ (생략)	제13조(외국환업무의 등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 ----- -----제1호다목부터 마 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 ③ ~ ⑨ (생략)
제18조(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영업소의 소재지</u>	제18조(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영업소의 소재지(법 제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대고객외국 환중개업무의 인가를 신청한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“외국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”)</u>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1.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외국통화의 매매(선물환은 제외한다)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2.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무의 경우 :
다음 각 목의 요건

가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라

국내에 설립된 법인일 것

나.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외국통화의 매매(선물환은 제외한다)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다.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

라.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·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

마. 인가를 신청한 자(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)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2.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고객외국환중개업무의 경우

전산시설을 갖추는 것

: 다음 각 목의 요건

가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라
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거나,
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
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일
것

나.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
상일 것. 다만, 인가를 받
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인
경우 해당 외국 법인의 국
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
치 및 운영을 위한 영업기
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볼
수 있다.

다.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
관한 보고 등을 수행하기
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
하는 전산시설을 국내에
갖출 것

라.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
지식·경험 등 업무 수행
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
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
것

마. 인가를 신청한 자(인가를
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
한다)가 법 제12조제4항에

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
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.

<삭 제>

<삭 제>

3.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

· 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
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
명 이상 갖출 것

4. 인가를 신청한 자(인가를 신
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)
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
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
지 아니할 것

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
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(이하
“외국환중개회사”라 한다)는
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
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
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
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,
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
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
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
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
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
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

③ -----

----- 자본금 또는
영업기금-- 제2항제1호나목
및 제2항제2호나목-----

----- 자본금 또는
영업기금-----

자본금 또는 영업기금 -----
-----.

④ ----- 업종별 외
국환중개업무의 -----

호와 같다.

1. 한국은행

2. 정부(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
·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

-----.

1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
음 각 목에 해당하면서 외국
환중개회사와 외국환중개업무
에 관하여 계약한 자(이하 “전
문금융기관등”이라 한다)를
말한다.

가. 한국은행

나. 정부(외국환평형기금을
운용 · 관리하는 경우에 한
정한다)

다.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
기관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
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
및 증권금융회사

마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
험회사

바. 외국 금융기관(내국지급
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
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
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
기관으로 한정한다)

2.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에는 전

다)

3.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
관
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
업자,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
융회사

5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
사

6. 외국 금융기관(내국지급수단
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
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
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
한다)

⑤ ~ ⑦ (생략)

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
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
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
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
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
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
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
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탁

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
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. 다만,
전문금융기관등이 제4항제1호
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
거주자로 한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9
조제1항제2호의 대고객외국환
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대고객외
국환중개회사는 기획재정부 장
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
하여야 하며, 그 책임한도액은
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<u>절차,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 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다.</u> ⑨ <u>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 에 의하여 제8항에 따라 예탁 한 보증금을 반환한다.</u> 1. <u>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 우</u> 2. <u>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</u> 제19조(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 무의 인가) ① ~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제19조(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 무의 인가) ① ~ ② (현행과 같 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외국환중개업무 중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비(非)핵심 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방법</u>
제20조(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 행) ① <u>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 9조제1항제2호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 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8조·제55조 및</u>	제20조(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 행) ① <u><삭제></u>

<u>제71조를 준용한다.</u> 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731